

충청북도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 변	안 호	206
--------	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7. 3. 6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제안 이유

- 충청북도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를 '96. 2. 13공포시행된 충청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직명변경된 재해구호기금의 기금운용관, 기금분임운용관,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명을 정비하여 기금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

주요 골자

-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 시행에 따른 충청북도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중 기금운용 및 출납공무원의 직명 변경
(충청북도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 제5조 2항)

- 직명 변경사항

- . 기 금 운 용 관 : 보사환경국장 ⇒ 사회복지국장
- . 기금분임운용관 : 사 회 과 장 ⇒ 사회복지과장
- . 기금출납공무원 : 복 지 계 장 ⇒ 사회복지계장

근거 법령 : 재해구호법 제15조, 제16조(재해구호기금의 적립)

기타 참고자료

1. 충청북도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 1 부
2. 신·구조문 대조표 1 부
3. 관계법령 발췌문 1 부

충청북도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중 "보사환경국장", "사회과장", "복지계장" 을 각각 "사회복지국장", "사회복지과장", "사회복지계장" 으로 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.